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정영출 의원 발의】



2017.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24호로 2017년 11월 13일 정영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안 제5조)

다.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라.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 등(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17. 11. 8. ~ 11. 1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는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

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감면,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가스 및 소음이 적은 친환경자동차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연료비 또한 적게 들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¹⁾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기준 : 2017.9월)

구분	전국	서울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보급	20,336대	3,530대	237대
급속충전시설	1422기	204기	11기

-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자동차의 0.1%²⁾에 그치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2017 환경부 지원계획 : 전기자동차 14,000대, 급속충전기 500기, 대당 보조금 1,400만원+ α

2) 2017. 9월 기준 전국 자동차등록수 : 22,375,311대, 전기차 20,336대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1.27.]

■ 『대기환경보전법』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 『주차장법』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